

# 심사지침 설정 등에 관한 지침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

전부개정 2022.06.13. 지침 제369호

개정 2024.07.17. 지침 제43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공고하는 심사지침의 설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이하“심사처리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적용을 위하여 공고되는 심사지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지침”이란 심사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적용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것을 말한다.
2. “심사사례지침”이란 원장이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를 근거로 심사지침으로 공고한 것을 말한다.

**제4조(심사지침설정 일반원칙)** ① 심사처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는 심사지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할 것
  2.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근거에 기반한 최신 의료정보를 적용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사례지침의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원장은 의약계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해진 심사사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처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사례지침으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선정사유
2. 청구내역
3. 진료내역
4. 결정사항
5. 결정사유(회의내용 포함)
6.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제5조(심사지침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지침 신설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지침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수립된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심사지침으로서의 적합성 및 지침의 개선사항 필요성 개선 등 심사지침에 관한 제반사항 검토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심사처리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모니터링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설 또는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분야별 위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내과계를 대표하는 위원 2명 이내
2. 외과계를 대표하는 위원 2명 이내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4.7.17.]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1. 심사 관련 부서 등 내·외부의 요구가 있는 때

2.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서면(영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제8조(의견 수렴)** ① 원장은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의약계단체, 전문기관, 공단 또는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약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심사지침 공고 등)** 원장은 심사처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공고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심사지침 전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의약단체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부 칙<지침 제369호, 2022.6.13.>**

이 지침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430호, 2024.7.17.>**

이 지침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